


서울고등법원

제 2 민 사 부

석명준비명령

사 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
원 고 김명호
피 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위 등본입니다
2006년 10월 11일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과 이의봉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37조에 따라 쌍방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석명을 구하는 바, 아래 기한까지 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기한 : 2006. 10. 31.

준비 사항

1. 쌍방에 대하여

쌍방이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성명, 주소, 입증취지, 증인 신문사항 등을 기재한 증인신청서(증인신문사항은 6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06. 9. 2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및 재임용 심사 절차의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바, 피고의 위 설명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지에 대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피고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가 1996. 3. 1.자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지에 대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성적 평가 당시 절대평가 방식에 의하여 성적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에 관한 피고의 학칙 또는 규정에 대하여 밝히시고,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6. 10. 10.

재 판 장 판 사 박 홍 우

